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	2023. . .
연 월 일	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3. 10. 6.

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호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10. 6.

제 출 자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-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운영기간이 2023. 12. 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필요
-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위탁 근거

- 가. 「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12조제2항
- 나.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 제6조제2항

3. 위탁내용

- 위탁개요
 - 위탁 운영기간: 2024. 1. 1. ~ 2026. 12. 31.(3년)
 - 위탁 운영비: 약 708,366천원 정도/1년(붙임1 참조)
 - ※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위탁운영비 증감요인 있음.
 - 위탁 방법: 공개 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(10월 중 공고 예정)

○ 위탁내용

-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(24시간)
-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
-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 관련 통계 관리

○ 운영현황: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9대(2024년 3대 증차 예정)

연번	차량번호	차종	소유자	등록일	비고
1	72보9432	카니발	고성군수	2017. 10. 20.	
2	72보9440	카니발	고성군수	2019. 04. 26.	
3	72보9447	카니발	고성군수	2019. 04. 26.	
4	72보9452	카니발	고성군수	2019. 04. 26.	
5	72보9435	카니발	고성군수	2020. 04. 14.	
6	72보9423	카니발	고성군수	2020. 10. 28.	
7	76누4927	카니발	고성군수	2021. 10. 05.	
8	76누4926	카니발	고성군수	2023. 01. 25.	
9	76누4909	카니발	고성군수	2023. 06. 26.	
10	-	카니발	고성군수	2024. ~	구입예정
11	-	카니발	고성군수	2024. ~	구입예정
12	-	카니발	고성군수	2024. ~	구입예정

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기준대수 변경(9대 → 12대)

·당초: 보행상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

·**변경: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**

4. 참고사항

가.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서: 붙임 1

나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: 붙임 2

다. 관계법령: 붙임 3

붙임1

민간위탁금 산출내역서

① 사업비 현황 : 금708,366천원 정도(민간위탁금)

② 민간위탁금(운영비)

관	항	목	예산요구액 (원)	산출기초	금액(원)
총 계			708,366,000		708,366,000
사무비	인건비 소계		521,312,000		521,312,000
	인건비	급여		기사 2,663,000×12명×12개월	383,472,000
				사무원 2,120,000×1명×12개월	25,440,000
		퇴직연금		기사 258,000×12명×12개월	37,152,000
				사무원 204,000×1명×12개월	2,448,000
		사대보험료		기사,사무원 300,000×13명×12개월	46,800,000
		상여금		기사,사무원 1,000,000원×13명×2회	26,000,000
	운영비 소계		187,054,000		187,054,000
	운영비	유류대		600,000원×12대×12개월	86,400,000
				차량정비 140,000원×12대×12개월	20,160,000
		차량정비유지비		차량단말기유지보수비	7,200,000
				50,000원×12대×12개월	7,200,000
		차량보험료		차량관리비 50,000원×12대×12개월	7,200,000
			차량보험료 2,000,000원×12대×1회	24,000,000	
수용비			사무용품 등 140,000원×12개월	1,680,000	
			정수기관리비 22,000원×12개월	264,000	
			회계프로그램 수수료 368,000×1회	368,000	
		지문근태기 월정료 44,000×12개월	528,000		
기타후생경비		기사근무복 150,000원×12명×2회	3,600,000		
제세공과금		자동차세100,000원×12대×1회	1,200,000		

관	항	목	예산요구액 (원)	산출기초	금액(원)
		공공요금		콜택시 단말기 전화요금 12,000원×12대×12개월	1,728,000
				사무실 전화요금 60,000×12개월	720,000
		유료통행료 (하행)		25,000×12대×12개월	3,600,000
		운전자교육 참여		운전자 교육참여 30,000원×12명×1회	360,000
		사무원출장 여비		출장여비 43,000원×1명×2회	86,000
		식대보조		식대보조 160,000원×13명×12개월	24,960,000
		예비비		예비비 3,000,000×1회	3,000,000

※ 2024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일정에 따라 위탁금 변동

※ 2024년 당초예산 편성시 9대 운영비 편성 후 1회 추경시 부족분 반영

붙임2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

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에 따른 적정성 검토

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자함

I 관련근거

- 「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 제12조제2항
- 「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

II 사업개요

- 위탁사무 :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
- 현수탁자 : (사)경남지체장애인협회 고성군지회(대표: 박동용)
- 위탁기간 : 2024. 1. ~ 2026. 12 (3년간)
- 위탁업무내용
 -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
 -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유지관리

III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

검토항목: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각호

연번	검토항목	검토결과	비고
1	다른 사무방식으 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○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함 에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유사한 업무를 수행중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할수 있음.	적정
2	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함	적정

3	경제적 효율성	○ 기존 전문인력 및 시설 활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 가능	적정
4	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운송사업 관련 민간의 운영 경험 및 전문지식 등을 적극활용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	적정
5	성과측정의 용이성	○ 특별교통수단 운영 계획에 기반하여 사업실적 및 자료 관리가 용이하며, 통계자료화하여 사업개선과 발전도모 가능	적정
6	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으며 위·수탁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 가능	적정
7	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	○ 여객자동차운송업자 및 비영리법인의 운송서비스 공급 관련 관심도가 늘어나는 추세로 서비스 공급 확대 전망	적정
8	그밖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○ 2023년 경남 18개시군 조사결과 경남 전 시군 민간위탁 시행 중	적정

□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

제12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,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지원한다.

□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

제6조(군의회 동의 및 보고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
2.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(이하 “재계약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